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81
----------	-------

발의연월일 : 2025. 6. 25.

발 의 자 : 김민전 · 최형두 · 강선영
조경태 · 인요한 · 최수진
김미애 · 서천호 · 배준영
권성동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되고 있는데,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판매대금이라는 명목 하에 도서정가 이상의 금액을 수수하고 있는 것이 관행화된 실정임.

출판기념회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전무하여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은 정치자금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호아목 신설).
- 나.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

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라.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둠(안 제45조제2항제7호 및 제46조제4호의2 신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

제6장에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출판기념회) 국회의원등은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3(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 내역 보고) 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등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세부내역, 증빙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한 자
제46조에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 내역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부터 적
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아.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u> <u>·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u> <u>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u> <u>후보자(이하 “국회의원등”</u> <u>이라 한다)가 자신의 출판</u> <u>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u> <u>및 출판물 판매수입</u>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3조의2(출판기념회)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 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 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33조의3(출판기념회의 수입 · 지출 내역 보고) ① 출판기념 회를 개최한 국회의원등은 출 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

	<u>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세부내역, 증빙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생략)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 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 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 한 자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4의2.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

5. ~ 7. (생략)	<u>여 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u> <u>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u> <u>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u> <u>한 자 또는 그 증빙서류를 허</u> <u>위 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u> 5. ~ 7. (현행과 같음)
--------------	--